

● 제286회 ●
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
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**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**

2019 4. 22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수 석 전 문 위 원

## 【 시장발의 】

의안번호 589

### I. 조례안 개요

#### 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서울특별시
- 나. 제안일 : 2019. 3. 29.
- 다. 회부일 : 2019. 4. 03.

##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## 가. 제안이유

-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“제로페이”)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(50플러스캠퍼스, 50플러스센터)의 수강료 및 기본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

##### 나. 주요내용

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(안 제6조의4제1항제7호)

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(안 부칙 제2조)

### 3. 참고사항

- (1) 관련 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등
- (2) 예산 조치 : 협의완료
- (3)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  - (가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  - (나) 입법예고(2018. 2. 21. ~ 3. 13.) 결과: 의견없음
  - (다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## 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정창훈)

### 1 개정안의 취지

-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50플러스캠퍼스 및 50플러스센터(이하 '50플러스 시설'이라 함)의 수강료 및 기본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자 제안되었음.

### 2 주요사항 검토

#### 가. 사용료의 감면 지원(안 제6조의4 제7호)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의4(사용료의 감면 등) ① 시장은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.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5. 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(자치구는 제외한다) :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</p>	<p>제6조의4(사용료의 감면 등) ① 시장은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.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(자치구는 제외한다) :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</p>

6. 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단체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: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

<신 설>

6. 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단체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: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

7. 소상공인

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)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:  
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줄임.  
다만,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사용료를 줄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
- 안 제 6조의4 제7호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로 50플러스 시설 사용료를 결제할 경우, 해당 결제 시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사용료 감면을 시행하는 내용임.
-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나, 조례의 시행기한이 '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여 시행한 시범적 성격만을 가지고 있음.
- 한시적인 기간 동안만을 운영하는 것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기간을 정한 일몰사업에 대한 해당사업의 안정성, 시장의 혼란

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됨.

- 또한 조례의 제안이유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인데 반해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인 50플러스캠퍼스와 50플러스센터의 수강료 및 기본시설사용료 감면이 지원대상인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듦.

### 3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로 50플러스 시설 사용료를 결제할 경우에는 일정한 감면혜택을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- 그러나 한시적인 기간 동안만 운영하는 사업시행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기간을 정한 일몰사업에 대한 해당사업의 안정성, 시장의 혼란 등의 문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-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제로페이사업의 홍보강화와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시장에 미치는 제한적인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**참 고 1**

**공공시설 이용자 제로페이 할인(감면) 추진 내용**

**□ 현황**

- 제로페이 적용 가능 시설 : 2,756개

\* 서울시 : 393개 시설(직영 164개, 투자출연기관 70개, 민간위탁 159개)

(단위 : 개)

구분	계	청소년시설	체육시설	교육시설	문화시설	복지시설	주차시설	기타
계	393	38	87	20	71	5	134	38
시직영	164	9	68	6	57	-	6	18
민간 위탁	159	27	17	13	14	5	67	16
투자 기관	66	2	2	-	-	-	60	2
출연 기관	4	-	-	1	-	-	1	2

\* 자치구 : 2,363개 시설(구별 평균 94개소)

**※ 추진 방안**

